

#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679호 2020. 8. 6.(목)

##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68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고시 -----1
- 사천시 고시 제269호 사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변경 및 시행계획 수립 고시 -5
- 사천시 고시 제270호 공유수면매립(소규모) 실시계획 승인사항 고시 -----18
- 사천시 고시 제271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변경 고시 ----- 21

##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995호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8
- 사천시 공고 제996호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48
- 사천시 공고 제997호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53

회 람										
--------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679호

사천시 고시 제2020-268호

##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고시

「하수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천시 와룡동 일원에 추진하는 『와룡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설치를 인가하고, 같은 법 제1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6일

## 사 천 시 장

### 1. 인가내용

시 설 의 명 칭	와룡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주 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성 명	사천시장(상하수도사업소장)
사 업 목 적	주거환경 개선 및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자 함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경남 사천시 와룡동 와룡마을 일원 ○ 면적 : 0.04 ha	
시설의 종류·명칭 및 용량	○ 종류 : 「하수도법」 제2조8호의 분류식하수관거 ○ 명칭 : 와룡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 용량 : 하수관 D150~200mm L=2.02km, 배수설비 40개소	
예정 하수처리구역	삼천포처리구역(연계처리)	
사 업 시 행 기 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간	

# 사 천 시 공 보

제 679 호

## 2.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소재지	부동산의 표시			시설면적 (㎡)	실제 이용현황	소유자	용도	비고
	지 번	지 목	지 적 (㎡)					
합 계			174,996	344.0				
소 계			142,726	171.4				
사천시 와룡동	34-1	임 야	53	1.6	도 로	사천시	하수관매설	
	35-1	전	266	5.2		사천시		
	34-3	임 야	500	3.5		국(경상남도)		
	555	하 천	128,597	93		국(국토교통부)		
	313	도 로	33	3.2		국(국토교통부)		
	309	대 지	436	1.4		김*세		
	308	전	549	5.7		서*용 외1인		
	301-1	도 로	331	7.0		사천시		
	305	전	2,489	3.1		서*인		
	558	도 로	754	6.4		국(국토교통부)		
	297-1	답	3,200	0.6		강*주		
	301	전	866	1.5		이*일		
	236-1	임 야	678	4.4		국(기획재정부)		
	236-2	도 로	47	1.5		사천시		
	236-3	답	833	8.5		국(기획재정부)		
	237-3	도 로	16	0.1		사천시		
	296-2	도 로	642	11.6		사천시		
	563	구 거	1,567	4.9		국(국토교통부)		
	240	대 지	764	3.9		강*남		
239-2	도 로	105	4.3	사천시				

# 사 천 시 공 보

제 679 호

소재지	부동산의 표시			시설면적 (㎡)	실제 이용현황	소유자	용도	비고
	지 번	지 목	지 적 (㎡)					
소 계			18,687	90.7				
사천시 와룡동	239-1	도 로	75	3.2	도 로	사천시	하수관매설	
	559	도 로	655	4.7		국(국토교통부)		
	242-1	도 로	160	6.5		사천시		
	244-2	도 로	132	3.9		강*제		
	245-2	도 로	60	2.4		강*홍 외 2인		
	260-3	도 로	666	16.0		사천시		
	260-4	도 로	4	0.2		사천시		
	216-2	답	438	8.6		김*우		
	216-1	답	2,655	2.6		김*우		
	208-1	도 로	449	8.3		사천시		
	208	답	912	8.6		강*수		
	208-2	답	262	1.0		사천시		
	205	답	5,229	11.4		강*황		
	204	답	783	4.0		조*일		
	342-2	대 지	1,445	1.0		강*황		
	291-2	대 지	231	2.0		강*쌍		
	291-1	전	2,984	0.9		강*쌍		
	289	대 지	473	0.4		김*용		
	291-3	대 지	869	2.9		안*이		
290	도 로	205	2.1	사천시				

# 사 천 시 공 보

제 679 호

소재지	부동산의 표시			시설면적 (㎡)	실제 이용현황	소유자	용도	비고
	지 번	지 목	지 적 (㎡)					
소 계			13,583	81.9				
사천시 와룡동	292-3	도 로	132	3.2	도 로	사천시	하수관매설	
	292-1	대 지	833	2.0		엄*권		
	292-2	도 로	86	1.2		사천시		
	288-2	도 로	109	2.4		사천시		
	293-1	답	757	1.5		강*쌍		
	293-4	도 로	450	6.2		사천시		
	557	도 로	893	9.8		국(국토교통부)		
	285-1	도 로	379	7.8		사천시		
	282-1	도 로	375	0.4		사천시		
	253-3	도 로	290	0.5		사천시		
	249-4	도 로	55	1.0		사천시		
	산83-2	도 로	1,704	12.2		사천시		
	261-8	도 로	136	1.2		사천시		
	산84-1	임 야	3,437	13.3		윤*래 외6인		
	261-5	도 로	301	7.9		국(국토교통부)		
	269-1	도 로	80	0.8		박*규		
	565	도 로	2,003	3.6		국(농림수산부)		
	213-1	도 로	255	5.1		사천시		
	212-1	도 로	93	0.2		사천시		
	산85-4	도 로	1,215	1.6		사천시		

3. 관계도서는 사천시청 상하수도사업소에 비치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관리팀(☎055-831-55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천 시 공 보

제679호

사천시 고시 제2020-269호

사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 기본계획 변경 및 시행계획 수립 고시

사천시 고시 제2018-77(2018. 04. 26.)호로 기본계획 수립 고시된 「사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변경 및 시행계획 수립 내용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기본계획 변경 및 시행계획 수립 고시 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8월 6일

## 사 천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사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 사업의 목적 : 본 사업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사업비 : 8,000백만원
4. 주요 사업내용
  - 가. 기본계획 대비 시행계획 변경 내용

# 사 천 시 공 보

제 679호

사업 분야	세부사업	사업개요	사업비(백만원)		비고
			기본계획	시행계획	
<b>합 계</b>			<b>8,000.0</b>	<b>8,000.0</b>	
<b>기초생활기반확충</b>			<b>2,823.5</b>	<b>3,709.4</b>	
	사천활력거점센터 조성	농산물판매장, 태양광 등	2,167.3	2,610.6	사 천 활 력 어울림센터로 명 칭 변 경
	다 어울림센터 조성	강의실, 다 어울림교육실 등	462.0	889.4	
	다목적 두레장터 조성	주차장(38면), 조경식재 등	194.2	209.4	
<b>지역경관개선</b>			<b>3,215.2</b>	<b>2,231.0</b>	
	지역공동체 놀이터 조성	어린이정원, 산책로정비 등	1,274.0	960.0	
	Wing-Wing특화거리 조성	정의1길, 읍내로 정비	1,941.2	1,271.0	
<b>지역역량강화</b>			<b>1,338.5</b>	<b>920.8</b>	
	주민·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주민 및 상인 역량강화 등	364.6	271.5	
	이벤트 및 축제 발굴·개최	축제개발 컨설팅, 축제 개최 등	62.2	52.9	
	공원체험 프로그램	어린이 체험프로그램 및 아뜰리에 개최	97.4	82.8	
	브랜드 및 상품개발	브랜드 및 상품개발 교육 및 워크숍	41.9	35.6	
	아열대 채소농장, 마을기업 운영	마을기업 및 농장교육	86.3	83.3	글로벌 문화교육 프로그램 포함
	McFood페스티벌 개최	축제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페스티벌 개최 및 운영	27.9	23.7	
	Wing-Wing특화거리	커뮤니티 경관디자인 등	107.0	91.0	
	스마트 두레공동체 프로그램	앱 개발, 홍보 및 운영	21.2	18.0	
	마을경영지원	창업지원, 센터운영지원, 회의비 등	530.0	262.0	
<b>부 대 비 용</b>		기본 및 실시 설계, 사업 관리비 등	<b>622.8</b>	<b>1,138.8</b>	

# 사 천 시 공 보

제 679호

## 나. 변경 사유

사업분야	세부사업		변경사유
기초생활 기반확충	사 천 활 력 어울림센터	사천활력거점센터	보상금 감정평가액 반영, 기존 상인회 건물 증축불가에 따라 신축으로 변경
		다 어울림센터	신축되는 사천활력거점센터 2층 활용
	다목적 두레장터 조성		세부설계에 따른 실 소요금액 반영
지역경관 개선	지역공동체 놀이터 조성		타 사업과의 중복구간 제외, 포장형식 변경
	Wing-Wing특화거리 조성		추진위원회, 관련부서 등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포장형식(화강판석, 사고석 등을 아스팔트 포장으로) 변경
지역역량 강화	교육 및 컨설팅, 마을경영지원 등		집행잔액(입찰차액), 센터운영비 감 조정 등 실 소요 사업비 반영
부대비용	측량설계비, 사업관리비 등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측량설계비 추가반영, 사업관리비 등 농어촌정비법 요율 적용

5. 사업시행자 : 사천시장

6. 사업시행기간 : 2017년 ~ 2021년(5년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가. 토지조서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읍	리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b>합 계</b>					<b>57,991</b>							
1) 사천활력어울림센터 조성					1,845							
1	사천	정의	401-13	대	264	264	최**외 7	사천읍 정의*길** 외				
2	〃	〃	401-14	대	91	91	정**	사천읍 수양로**				
3	〃	〃	401-15	대	258	258	백**	사천읍 정의*길**				
4	〃	〃	401-21	대	110	110	김**	사천읍 정의*길**				



# 사 천 시 공 보

제 679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m <sup>2</sup>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읍	리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5	〃	〃	401-32	대	25	25	백**	사천읍 정의*길**				
6	〃	〃	402-1	대	74	74	하**	정동면 쇠실*길**				
7	사천	정의	401-10	대	228	228	사천시					
8	〃	〃	401-11	대	105	105	사천시					
9	〃	〃	401-12	대	622	622	사천시					
10	〃	〃	401-34	대	6	6	사천시					
11	〃	〃	401-36	대	62	62	사천시					
2) 다목적두레장터 조성					1,288							
1	사천	정의	389-47	대	34	34	사천시					
2	〃	〃	389-6	대	139	139	사천시					
3	〃	〃	389-8	대	149	149	사천시					
4	〃	〃	396-1	대	93	93	기재부					
5	〃	〃	396-2	대	17	17	우**외2	사천읍 역사동길**				
6	〃	〃	396-28	대	165	165	기재부					
7	〃	〃	396-29	대	112	112	기재부					
8	〃	〃	396-30	대	5	5	기재부					
9	〃	〃	401-27	대	44	44	사천시					
10	〃	〃	401-33	대	70	70	사천시					
11	〃	〃	401-37	대	39	39	사천시					
12	〃	〃	401-38	대	4	4	사천시					
13	〃	〃	401-7	대	157	157	사천시					
14	〃	〃	401-8	대	73	73	사천시					
15	〃	〃	401-9	대	187	187	사천시					

# 사 천 시 공 보

제 679 호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읍	리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 지역공동체놀이터(수양공원) 조성					47,881							
1	사천	정의	175	전	480	480	사천시					
2	〃	〃	177	전	635	635	사천시					
3	〃	〃	211	대	364	364	사천시					
4	〃	〃	213	공	146	146	사천시					
5	〃	〃	218	공	175	175	사천시					
6	〃	〃	167-10	도	609	609	사천시					
7	사천	정의	167-11	도	120	120	사천시					
8	〃	〃	167-4	도	85	85	사천시					
9	〃	〃	167-5	전	40	40	사천시					
10	〃	〃	174-1	전	601	601	사천시					
11	〃	〃	174-2	도	69	69	사천시					
12	〃	〃	178-1	전	1,053	1,053	사천시					
13	〃	〃	180-5	공	80	80	사천시					
14	〃	〃	210-1	공	1,117	1,117	사천시					
15	〃	〃	210-15	공	99	99	사천시					
16	〃	〃	210-18	공	123	123	사천시					
17	〃	〃	210-2	공	807	807	사천시					
18	〃	〃	210-20	공	27	27	사천시					
19	〃	〃	210-3	공	443	443	사천시					
20	〃	〃	210-4	공	776	776	사천시					
21	〃	〃	210-6	공	256	256	사천시					
22	〃	〃	210-9	공	63	63	사천시					
23	〃	〃	212-1	공	14,218	14,218	사천시					
24	〃	〃	214-1	공	147	147	사천시					
25	〃	〃	214-2	공	510	510	사천시					

# 사 천 시 공 보

제 679 호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m <sup>2</sup>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읍	리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6	〃	〃	214-3	공	65	65	사천시					
27	〃	〃	214-4	공	138	138	사천시					
28	〃	〃	219-1	공	154	154	사천시					
29	〃	〃	219-2	공	265	265	사천시					
30	〃	〃	219-3	공	246	246	사천시					
31	〃	〃	219-4	공	21	21	사천시					
32	〃	〃	219-5	공	37	37	사천시					
33	사천	정의	219-6	공	23	23	사천시					
34	〃	〃	219-7	공	34	34	사천시					
35	〃	선인	501	공	685	685	사천시					
36	〃	〃	502	공	774	774	사천시					
37	〃	〃	503	공	645	645	사천시					
38	〃	〃	506	공	939	939	사천시					
39	〃	〃	581	대	419	419	사천시					
40	〃	〃	582	공	1,025	1,025	사천시					
41	〃	〃	583	공	737	737	사천시					
42	〃	〃	606	공	152	152	사천시					
43	〃	〃	579-1	공	678	678	사천시					
44	〃	〃	579-2	대	592	592	사천시					
45	〃	〃	579-5	사	3,108	3,108	사천시					
46	〃	〃	579-6	공	855	855	사천시					
47	〃	〃	579-7	대	188	188	사천시					
48	〃	〃	580-2	사	12,965	12,965	사천시					
49	〃	〃	581-1	대	93	93	사천시					

# 사 천 시 공 보

제 679호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m <sup>2</sup>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읍	리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 Wing-Wing특화거리					6,977							
1	사천	수석	252-3	도	3,692	488	국토부					읍내 로
2	〃	〃	251-14	대	60	1	김**	진주시 망경동**				
3	〃	〃	251-15	대	796	9	허**	사천읍 수석리**	삼천포축산업 협동조합		근저당권	
4	〃	〃	253-10	도	149	136	사천시					
5	〃	〃	251-5	대	10	5	국토부					
6	〃	〃	251-2	도	298	298	사천시					
7	〃	〃	251-7	도	11	11	국토부					
8	〃	〃	761-35	도	8,309	91	국토부					
9	사천	수석	236-4	도	82	82	국토부					
10	〃	〃	234-2	도	45	28	사천시					
11	〃	〃	237-2	도	7	7	국토부					
12	〃	〃	225-2	도	665	600	국토부					
13	〃	〃	761-16	도	26	1	국토부					
14	〃	〃	222-2	전	9	2	사천시					
15	〃	〃	233-1	도	814	460	사천시					
16	〃	〃	230-2	도	88	83	국					
17	〃	〃	230-7	도	26	15	국토부					
18	〃	정의	436	도	399	397	국토부					
19	〃	〃	431	대	73	1	신**	사천읍 정의리**				
20	〃	〃	436-1	도	40	2	기재부					
21	〃	〃	433	잡	56	7	사천시					
22	〃	〃	434	잡	10	4	천**	사천읍 선인리**				
23	〃	〃	435	잡	2	2	국토부					
24	〃	〃	435-1	대	3	2	영화**	진주시 상봉동**				
25	〃	〃	394-76	대	92	1	이** 외 2	사천읍 정의리** 외				
26	〃	〃	390-3	도	1,158	566	사천시					

# 사 천 시 공 보

제 679 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m <sup>2</sup>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읍	리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7	〃	〃	393-4	도	225	221	국토부					
28	〃	〃	390-10	대	86	3	오**	사천읍 정의리**				
29	〃	〃	390-12	대	69	1	이**외 1	사천읍 정의리** 외	삼천포축산업 협동조합		근저당권	1/2
30	〃	〃	415-13	도	221	7	국토부					
31	〃	〃	416	구	664	8	농식품부					
32	〃	〃	360-2	도	129	128	사천시					
33	〃	〃	359-1	도	36	36	이**	사천읍 평화동**				
34	〃	〃	357-8	도	56	54	국토부					
35	〃	〃	334-2	도	212	206	국토부					
36	사천	정의	325-1	도	23	23	기재부					
37	〃	〃	336-5	도	165	165	사천시					
38	〃	〃	336-3	도	96	96	국토부					
39	〃	〃	321-1	도	69	69	사천시					
40	〃	〃	419	구	161	14	기재부					
41	〃	〃	418	도	65	8	국토부					
42	〃	〃	320-2	도	110	82	사천시					
43	〃	〃	338-1	대	10	10	이**	서울특별시 도곡동**	경남은행		근저당권	
44	사천	평화	201-7	도	85	85	국토부					
45	〃	〃	43-15	도	1	1	사천시					
46	〃	〃	43-6	도	3	3	사천시					
47	〃	〃	43-1	대	3	3	이**	사천읍 평화동**				
48	〃	〃	43-2	도	14	14	사천시					
49	〃	〃	197-20	도	44	43	국토부					
50	〃	〃	247-5	도	415	169	사천시					
51	〃	〃	247-4	도	361	99	사천시					
52	〃	〃	247-6	도	10	10	국토부					

# 사 천 시 공 보

제 679호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m <sup>2</sup>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읍	리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53	〃	〃	252	대	61	6	이**	부산광역시 황령대로**				
54	〃	〃	197-1	구	708	3	국토부					
55	〃	정의	389-3	도	694	694	국토부					정의1 길
56	〃	〃	390-3	도	1,158	380	사천시					
57	〃	〃	401-2	도	512	512	사천시					
58	〃	〃	404-2	도	453	453	사천시					
59	〃	〃	410-2	도	258	102	국토부					
60	〃	〃	415-15	도	1,887	20	국토부					

# 사 천 시 공 보

제679호

## 나. 물건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및 수량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사천읍 정의리	401-13	근린생활 시설	블럭조강판지붕 (12*7)	84	최**	사천읍 정의*길**				
2	"	"	주택	블럭조스레트 (11*4)	44	"	"				
3	"	"	창고	블럭조스레트 (3*4)	12	"	"				
4	"	"	창고 및 화장실	블럭조스레트 (5*4)	20	"	"				
5	"	"	가추	철파이프조스레트 (11*1)	11	"	"				
6	"	"	수도		1	"	"				
7	"	"	영업보상	공간연출 시설이전비	1	"	"				
8	"	"	영업보상	도심원 시설이전비 등	1	이**	사천읍 정의*길**				
9	"	401-14	근린생활 시설	철근콘크리트	77.02	정**	사천읍 수양로**				
10	"	"	수도		1	"	"				
11	"	"	영업보상	막창&뒷고기	1	김**	사천읍 정의*길**				
12	"	"	시설 이전비 등	주방시설 및 영업시설일체 등	1	"	"				
13	"	"	간판	1*2, 2*4	2	"	"				
14	"	401-15	주택1층	철근콘크리트	121.77	백**	사천읍 정의*길**				
15	"	"	주택2층	철근콘크리트	56.65	"	"				
16	"	"	대문1	철재(3*2) 적벽문주2	1	"	"				
17	"	"	대문2	샷시조(1*2)	1	"	"				
18	"	"	태양광 설비		1	"	"				
19	"	"	수조	콘크리트조(1*3*1)	1	"	"				
20	"	"	다용도실	판넬조판넬(7*2)	14	"	"				
21	"	"	바닥	콘크리트(5*10*1/2)	25	"	"				
22	"	"	가추	철파이프강판지붕 (1.5*2)	3	"	"				
23	"	"	화단1	블럭조(5*1)	1	"	"				
24	"	"	화단2	2*8	1	"	"				
25	"	"	수도		1	"	"				
26	"	"	은목서	R20	2	"	"				

# 사 천 시 공 보

제 679 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및 수량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7	사천읍 정의리	401-15	동백나무	R10	1	백**	사천읍 정의*길**				
28	"	"	동백나무	R7	2	"	"				
29	"	"	나무수국	R7	1	"	"				
30	"	"	자목련	R7	2	"	"				
31	"	"	사철나무	R20	1	"	"				
32	"	"	사철나무	R5	1	"	"				
33	"	"	철죽	H1.5, W1.5	9	"	"				
34	"	"	수국		1	"	"				
35	"	"	꽃치자 나무	H1.5	1	"	"				
36	"	"	목단		1	"	"				
37	"	"	기타화분		20	"	"				
38	"	401-21	근린생활 시설	블럭조 스레트위 강판	28.43	김**	사천읍 정의*길**				
39	"	"	주택	블럭조스레트	28	"	"				
40	"	"	주택	블럭조스레트	21	"	"				
41	"	"	창고 및 화장실	블럭조스레트	8	"	"				
42	"	"	계단	콘크리트	1	"	"				
43	"	"	수도		1	"	"				
44	"	"	대문	철재 슬라브	1	"	"				
45	"	402-1	근린생활 시설	경량철골구조	30.24	하**	정동면 쇠실*길**				
46	"	"	주택	블럭조스라브(5*4)	20	"	"				
47	"	"	보일러실	블럭조스레트(1.5*2)	3	"	"				
48	"	"	화장실	블럭조스라브(1*1)	1	"	"				



# 사 천 시 공 보

제 679 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및 수량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9	"	"	물탱크	FRP및콘크리트	1	"	"				
50	"	"	가추	스레트(5*2)	10	"	"				
51	"	"	계단	콘크리트(5*1)	1	"	"				
52	사천읍 정의리	402-1	대문	샷시조(3*2)	1	하**	정동면 외실*길**				
53	"	"	수도		1	"	"				
54	"	"	바닥	콘크리트(5*5)	25	"	"				
55	"	"	영업보상	현대장식	1	"	"				
56	"	"	시설 이전비 등	제고자산 및 영업시설일체 등	1	"	"				
57	"	"	간판	1*2	2	"	"				
58	"	401-12	점포1	블럭조스레트 및 강판지붕(5*5)	25	강**	사천읍 정의*길**				
59	"	"	점포2	블럭조강판지붕(6*3)	18	"	"				
60	"	"	영업보상	한성상회	1	"	"				
61	"	"	시설 이전비 등	고추분쇄기 외 기계시설일체	1	"	"				
62	"	"	전기시설	8KW	1	"	"				
63	"	"	사무실	판넬조(1*2)	2	"	"				
64	"	"	가추	철파이프조 강판지붕(6*4)	24	"	"				
65	"	"	간판	5*1	1	"	"				
66	"	"	점포3	블럭조강판지붕(4*4)	16	차**	사천읍 정의*길**				
67	"	"	점포4	블럭조스레트(3*7)	21	"	"				
68	"	"	점포5	블럭조스레트(3*6)	18	"	"				
69	"	"	영업보상	성민상회	1	"	"				

# 사 천 시 공 보

제 679 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및 수량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70	"	"	시설 이전비 등	고추분쇄기 외 기계시설일체	1	"	"				
71	"	"	가추1	강판지붕 (15*(5+3)*1/2)	60	"	"				
72	"	"	가추2	천막(접이식) (7*1)	7	"	"				
73	"	"	냉동고	판넬조(6*2)	12	"	"				
74	"	"	전기시설1	7KW	1	"	"				
75	"	"	전기시설2	4KW	1	"	"				
76	"	"	간판	5*1	1	"	"				

8. 관계도서는 사천시청 도시재생과(055-831-3240),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시사  
지역개발부(055-851-8146)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 사 천 시 공 보

제 679 호

사천시 고시 제2020-270호

## 공유수면매립(소규모) 실시계획 승인사항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매립(소규모) 실시계획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 8. 6.

## 사 천 시 장

1. 실시계획 승인 연월일 : 2020.07.16.

2. 매립 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사천시장(해양수산과장)

나. 주 소 :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3. 매립 목적 및 공사구역의 위치·면적

사업명	매립목적	매립위치(장소)	매립면적(m <sup>2</sup> )	매립공사 시행기간	비 고
종포어장 진입로 개설	도로 매립	사천시 용현면 신촌리 558-1	868	2020.07. ~ 2020.12.	

4.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 계획 : 도로(370m)

5. 실시계획 승인 조건

가. 소규모매립 면허 시 부여된 조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나. 소규모매립 공사 시 발생하는 어업피해 및 각종 민원에 대하여는 사업 시행자가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함.

다. 실시계획 승인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 서 및 실시설계도서 내용대로 사업이 시행되어야 함.

# 사 천 시 공 보

제679호

(붙임1)

## □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

### 1)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단위 : m<sup>2</sup>)

구 분	필 지 수	공 부 상 면 적	편 입 면 적	비 고
계	3	14,431	1,434	
전	2	1,305	294	
임	1	10,126	1,140	
공유수면	-	-		868

### 2) 소유자별 토지이용 현황

(단위 : m<sup>2</sup>)

구 분	필 지 수	공 부 상 면 적	편 입 면 적	비 고
계	3	14,431	1,434	
공유지				
경상남도	1	10,126	1,140	
사유지	2	1,305	294	
공유수면	-	-		8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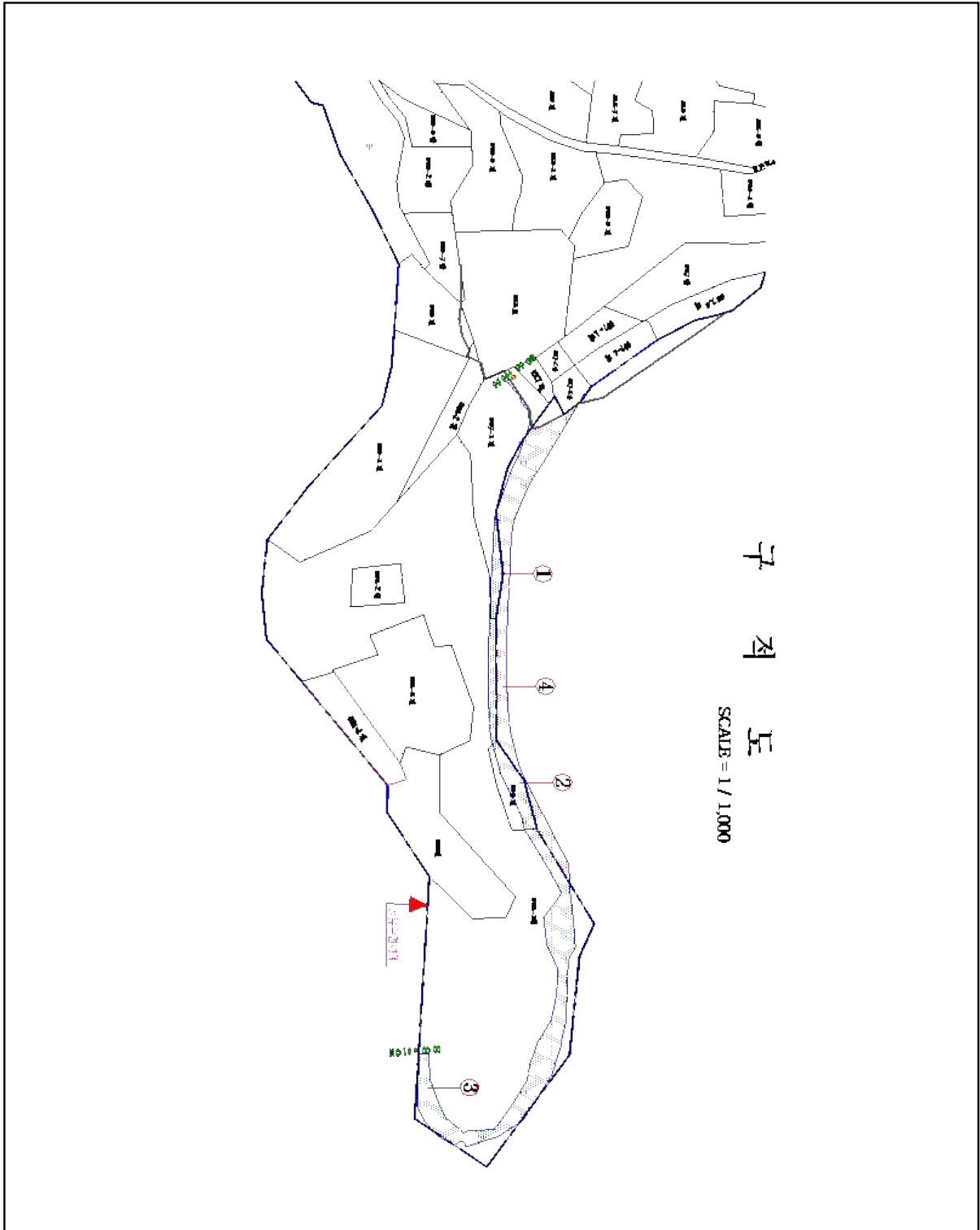
###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m <sup>2</sup> )	비 고
도로	2,302	868(공유수면)
합 계	2,302	

# 사천시공보

제679호

## □ 토지이용계획도



# 사 천 시 공 보

제679호

사천시 고시 제2020-271호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변경 고시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사항을 고시 합니다.

2020. 8. 5.

### 사 천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2.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사항  
- 확정측량으로 면적 변경

건축물 사업규모			대 지 현 황				비고
용 도 (세대수)	연면적 (㎡)	층수 (동수)	지 번	용 도 지 역	지 목	면적(㎡)	
공동주택 (아파트- 1,73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237,459.8642	지하2 지상10~19 (주28동)	정동면 예수리 산64-18번지 외 106필지	제1종일반주거지역 (주거형지구단위)	전,답, 도,대, 답,과, 묘,구	98,774→ 98,711.1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 산64-18번지의 106필지  
(산61-9, 산66-9, 269-2, 835-7, 803-3, 803-1, 599-13, 792-5, 796-2, 795-6, 795-5, 795-8, 795-7, 795-2, 795-1, 794, 792-17, 830-4, 832, 836, 산61-2, 산61-7, 산62, 335-16, 335-17, 812-13, 812-5, 812-4, 812-3, 812-2, 812-1, 812, 347-7, 348, 802-2, 산66-2, 809, 808, 807-4, 807-3, 807-2, 807-1, 811, 810-3, 339-2, 340, 341, 341-1, 342-1, 342-2, 342-3, 343, 343-1, 268-1, 812-11, 812-10, 812-9, 812-8, 812-7, 812-6, 797-1, 271, 272, 269-1, 270, 273, 273-1, 344, 344-1, 344-2, 347-2, 347-4, 347-5, 347-10, 산66-11, 810, 806-2, 806-1, 803-6, 803-5, 807, 806-5, 806-4, 802-1, 802, 800-4, 산66-17, 산66-14, 산66-13, 813, 814, 812-12, 337, 337-1, 337-4, 338-1, 338-2, 339, 339-1, 599-14, 349-1, 803-2, 803-4, 835-4, 275-16, 599-24)

4.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 ~ 2020. 06. 30.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의제(일괄)처리 되는 사항  
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나. 개발행위(변경)허가

# 사 천 시 공 보

제679호

## 사천 예수지구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 **변경** 승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도시 계획 시설 사업 실시 계획 변경 인가 고시 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 1. 도시관리계획(예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내용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

##### 1)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b>변경</b>	⑩	예수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 847번지 일원	132,570	<b>증) 531.6</b>	133,101.6	경상남도 고시 제2008-696 호 (‘08.12.26)

##### 2)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 시 번호	위 치	면 적 (㎡)	변 경 사 유
변경	⑩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 847번지 일원	133,101.6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구역계 변경 - 면적 : 132,570㎡ → 133,101.6㎡ (증 531.6㎡)

####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 교통시설

##### (1) 도 로 **[변경]**

# 사 천 시 공 보

제 679 호

(가) 도로 총괄표

류 별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 선 수 (개)	연 장 (m)	면 적 (㎡)	노 선 수 (개)	연 장 (m)	면 적 (㎡)	노 선 수 (개)	연 장 (m)	면 적 (㎡)	노 선 수 (개)	연 장 (m)	면 적 (㎡)
합 계	기 정	4	3,007 (745)	55,735 (6,859)	2	2,652 (390)	53,270 (4,394)	-	-	-	2	355 (355)	2,465 (2,465)
	변 경	4	3,007 (745)	56,586.5 (7,760.9)	2	2,652 (390)	53,458.2 (4,632.6)	-	-	-	2	355 (355)	3,128.3 (3,128.3)
중 로	기 정	3	2,770 (508)	54,454 (5,578)	2	2,652 (390)	53,270 (4,394)	-	-	-	1	118 (118)	1,184 (1,184)
	변 경	3	2,770 (508)	54,766.5 (5,940.9)	2	2,652 (390)	53,458.2 (4,632.6)	-	-	-	1	118 (118)	1,308.3 (1,308.3)
소 로	기 정	1	237 (237)	1,281 (1,281)	-	-	-	-	-	-	1	237 (237)	1,281 (1,281)
	변 경	1	237 (237)	1,820.0 (1,820.0)	-	-	-	-	-	-	1	237 (237)	1,820.0 (1,820.0)

※ ( )는 지구내 연장 및 면적임



# 사 천 시 공 보

제 679호

## (나)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 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 별	번 호	폭 원 (m)								
기정	중로	1	16	20~30	집산도로	2,473 (211)	중로1-14	대로1-2	일반도로	사천강	'09. 1. 20 사천2009-7호	
변경	중로	1	16	20~30	집산도로	2,473 (211)	중로1-14	대로1-2	일반도로	사천강	-	선형조정
기정	중로	1	47	20	집산도로	179 (179)	중로1-16	소로3-4 6	일반도로	-	'08. 12. 26 사천2008-696 호	
변경	중로	1	47	20	집산도로	179 (179)	중로1-16	소로3-4 6	일반도로	-	-	선형조정
기정	중로	3	46	11	국지도로	118 (118)	중로1-47	예수리 산65-1	일반도로	-	'17. 3. 22 사천2017-57호	
변경	중로	3	46	11	국지도로	118 (118)	중로1-47	소로 3-160	일반도로	-	-	선형조정
기정	소로	3	160	4~8	국지도로	237 (237)	중로3-46	예수리 산66-3	일반도로	-	'18. 2. 28 사천2018-50호	
변경	소로	3	160	4~8	국지도로	237 (237)	중로3-46	예수리 산66-3	일반도로	-	-	선형조정

※ ( )는 지구내 연장임

# 사 천 시 공 보

제679호

## (다)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중로 1-16	중로 1-16	· 도로 선형 조정 - B=20~30m, L=2,473m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도로 선형 조정
중로 1-47	중로 1-47	· 도로 선형 조정 - B=20m, L=179m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도로 선형 조정
중로 3-46	중로 3-46	· 도로 선형 조정 - B=11m, L=118m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도로 선형 조정
소로 3-160	소로 3-160	· 도로 선형 조정 - B= 4m~8m, L=237m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도로 선형 조정

## 나) 공간시설

### (1) 공 원 [변경]

#### (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공원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㉔	공원	어린이 공 원	정동면 예수리 838번지	2,747	감) 1.9	2,745.1	'17. 3. 22 사천2017-57 호	

#### (나)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㉔	공 원	· 어린이공원㉔ 면적 변경 - 면적 : 2,747㎡ → 2,745.1㎡(감 1.9㎡)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조정

# 사 천 시 공 보

제 679 호

(2) 녹지 [변경]  
(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⑪	녹지	완충녹지	정동면 예수리 839번지	1,209	감) 4.6	1,204.4	'08. 12. 26 경남2008-696호	
변경	⑫	녹지	완충녹지	정동면 예수리 841번지	1,520	증) 5.8	1,525.8	'08. 12. 26 경남2008-696호	
변경	㉔	녹지	경관녹지	정동면 예수리 844번지 일원	3,515	감) 473.7	3,041.3	'08. 12. 26 경남2008-696호	
변경	㉕	녹지	경관녹지	정동면 예수리 848번지	3,551	증) 204.3	3,755.3	'17. 3. 22 사천2017-57호	

(나)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⑪	녹지	· 완충녹지⑪ 면적 변경 - 면적 : 1,209㎡ → 1,204.4㎡ (감 4.6㎡)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조정
⑫	녹지	· 완충녹지⑫ 면적 변경 - 면적 : 1,520㎡ → 1,525.8㎡ (증 5.8㎡)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조정
㉔	녹지	· 경관녹지㉔ 면적 변경 - 면적 : 3,515㎡ → 3,041.3㎡ (감 473.7㎡)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조정
㉕	녹지	· 경관녹지㉕ 면적 변경 - 면적 : 3,551㎡ → 3,755.3㎡ (증 204.3㎡)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조정

# 사 천 시 공 보

제679호

## (3) 공공공지 [변경]

### (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④	공공 공지	정동면 예수리 850번지	1,195	증) 0.7	1,195.7	'17. 3. 22 사천2017-57호	

### (나)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시번 호	시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④	공공 공지	· 공공공지④ 면적 변경 - 면적 : 1,195㎡ → 1,195.7㎡ (증 0.7㎡)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조정

##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 (1) 학 교 [변경]

### (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 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⑩	학교	초등 학교	정동면 예수리 840번지	13,200	감) 38.0	13,162. 0	'08. 12. 26 경남2008-696 호	

### (나)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시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⑩	학교 (초등학교 )	· 초등학교⑩ 면적 변경 - 면적 : 13,200㎡ → 13,162.0㎡ (감 38.0㎡)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조정

# 사 천 시 공 보

제 679 호

##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 면 번 호	가 구 번 호	면 적(㎡)			위 치	획 지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변 경	변경후		
2	13,200	감) 38.0	13,162.0	-	학교⑱						
3	1,209	감) 4.6	1,204.4	-	완충녹지 ⑪						
4	2,747	감) 1.9	2,745.1	-	공원⑲						
5	1,520	증) 5.8	1,525.8	-	완충녹지 ⑫						
6	2,662	감) 467.4	2,194.6	-	경관녹지 ⑫						
7	-	증) 109.9	109.9	-							
8	853	감) 116.2	736.8	-	공공공지 ④						
9	1,195	증) 0.7	1,195.7	-							
10	3,551	증) 204.3	3,755.3	-	경관녹지 ⑫						
도로	6,859	증) 901.9	7,760.9	-	-						

###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 (1) 가구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가구 번호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가구면적 변경 - 면적:132,570㎡→133,101.6㎡ (증 531.6㎡)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조정

# 사 천 시 공 보

제 679호

## (2) 획지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가 구 번호	획 지 번호	변경 내용	변경 사유
	I	1	· 획지면적 변경 - 면적 : 98,774㎡ → 98,711.1㎡ (감 62.9㎡)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획지면적 조정
		2	· 획지면적 변경 - 면적 : 13,200㎡ → 13,162.0㎡ (감 38.0㎡)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획지면적 조정
		3	· 획지면적 변경 - 면적 : 1,209㎡ → 1,204.4㎡ (감 4.6㎡)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획지면적 조정
		4	· 획지면적 변경 - 면적 : 2,747㎡ → 2,745.1㎡ (감 1.9㎡)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획지면적 조정
		5	· 획지면적 변경 - 면적 : 1,520㎡ → 1,525.8㎡ (증 5.8㎡)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획지면적 조정
		6	· 획지면적 변경 - 면적 : 2,662㎡ → 2,194.6㎡ (감 467.4㎡)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획지면적 조정
		7	· 획지 신설 - 면적 : 109.9㎡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획지 신설
		8	· 획지면적 변경 - 면적 : 853㎡ → 736.8㎡ (감 116.2㎡)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획지면적 조정
		9	· 획지면적 변경 - 면적 : 1,195㎡ → 1,195.7㎡ (증 0.7㎡)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획지면적 조정
		10	· 획지면적 변경 - 면적 : 3,551㎡ → 3,755.3㎡ (증 204.3㎡)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획지면적 조정

3)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사 천 시 공 보

제 679호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I-1 (공동 주택)	[기정] 정동면 예수리 산64-18 번지 일원  [변경] 정동면 예수리 847번지	건축 물 용 도	지 정 용 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주택법이 허용하는 사항)		
			불 허 용 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축 물 규 모	건폐 율	· 60% 이하		
				용적 률	· 200%이하	
			높 이	· 평균층수 18층 이하, 기타부대복리시설 5층 이하		
			배 치	· 가로경관 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하여 일관성 있는 건축물 배치를 유도 · 탑상형 또는 직각배치 구간		
			형 태	· 아파트 단지의 건물형태의 변화를 통해 조화로운 경관 및 식별성을 갖도록 함		
			색 채	· 건축물의 외벽 및 지붕의 색채는 주변지역과 조화될 수 있는 밝고 명량한 계열의 색채를 주조색으로 설정 · 건축물의 외벽은 서로 유사한 재료를 사용하고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의 사용을 지양		
		I-2 (학교 )	[기정] 정동면 예수리 804-2 번지 일원  [변경] 정동면 예수리 840번지	건축 물 용 도	지 정 용 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부속용도
					불 허 용 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축 물 규 모	건폐 율			· 60% 이하		
				용적 률	· 20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부지여건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남향 또는 남동향의 배치가 되도록 운동장을 남쪽에 배치		
	형 태			-		
	색 채			· 건축물의 외벽 및 지붕의 색채는 주변지역과 조화될 수 있는 밝고 명량한 계열의 색채를 주조색으로 설정 · 건축물의 외벽은 서로 유사한 재료를 사용하고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의 사용을 지양		

# 사 천 시 공 보

제679호

## 다.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

### 1) 공원<sup>㉔</sup> (어린이공원)

#### 가) 시설계획 총괄표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부지면적	구성비(% )	건축면적	부지면적	구성비(% )	건축면적	
합 계	2,747	100.00	-	2,745.1	100.00	-	
도로 및 광 장	783	28.51	-	783.0	28.53	-	
유 희 시 설	447	16.27	-	447.0	16.28	-	
운 동 시 설	397	14.45	-	397.0	14.46	-	
녹 지	1,120	40.77	-	1,118.1	40.73	-	

#### 나) 세부시설 결정 조서

시 설 구 분		부지면적(㎡)			건 축 면 적(㎡)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바닥면적	층 수	연면적	
총 계		2,747	감) 1.9	2,745.1	-	-	-	
도로 및 광장		783	-	783.0	-	-	-	
1-1	도 로	195	-	195.0	-	-	-	
2-A	광 장	198	-	198.0	-	-	-	
2-B	광 장	345	-	345.0	-	-	-	
2-C	광 장	45	-	45.0	-	-	-	
유희시설		447	-	447.0	-	-	-	
3	어린이놀이터	447	-	447.0	-	-	-	
운동시설		397	-	397.0	-	-	-	
4	체력 단련장	397	-	397.0	-	-	-	
녹 지		1,120	감) 1.9	1,118.1	-	-	-	
5	녹 지	1,120	감) 1.9	1,118.1	-	-	-	



# 사 천 시 공 보

제679호

## 다) 도로 결정 조서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비 고
소로	3	1	2.0	연결로	94	학교	광장2-A	산책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 인가 내용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 산64번지 일원 **[변경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녹지, 공공공지, 학교)사업
  - 나. 명 칭 : 예수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변 경]**

구 분	규 모		비 고	
	기 정	변 경		
도 로	중로 1-16호선	· B=3m, L=211m, A=613m <sup>2</sup>	· B=3m, L=211m, A=634.4m <sup>2</sup>	증) 21.4
	중로 1-47호선	· B=20m, L=179m, A=3,781m <sup>2</sup>	· B=20m, L=179m, A=3,998.2m <sup>2</sup>	증)217. 2
	중로 3-46호선	· B=11m, L=118m, A=1,184m <sup>2</sup>	· B=11m, L=118m, A=1,308.3m <sup>2</sup>	증)124. 3
	소로 3-160호선	· B=4m~8m, L=237m, A=1,281m <sup>2</sup>	· B=4m~8m, L=237m, A=1,820m <sup>2</sup>	증)539. 0
공 원	어린이공원 29	· A=2,747m <sup>2</sup>	· A=2,745.1m <sup>2</sup>	감) 1.9
녹 지	완충녹지 11	· A=1,209m <sup>2</sup>	· A=1,204.4m <sup>2</sup>	감) 4.6
	완충녹지 12	· A=1,520m <sup>2</sup>	· A=1,525.8m <sup>2</sup>	증) 5.8
	경관녹지 22	· A=3,515m <sup>2</sup>	· A=3,041.3m <sup>2</sup>	감)473.7
	경관녹지 72	· A=3,551m <sup>2</sup>	· A=3,755.3m <sup>2</sup>	증)204. 3
공공공지	공공공지 4	· A=1,195m <sup>2</sup>	· A=1,195.7m <sup>2</sup>	증) 0.7
학 교	초등학교 18	· A=13,200m <sup>2</sup>	· A=13,162.0m <sup>2</sup>	감) 38.7

# 사 천 시 공 보

제 679호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가. 성 명 : (주)한국자산신탁 대표자 김규철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없음]

가.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1개월이내

나. 준공예정일 : 2020. 6. 30.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구분	리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 소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1	예수리	273	전	1,447	828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2	예수리	275 - 16	원	662	656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3	예수리	599 - 11	대	167	167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4	예수리	599 - 12	답	103	103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5	예수리	599 - 13	대	794	388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6	예수리	599 - 14	답	659	154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7	예수리	599 - 15	답	20	20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8	예수리	599 - 22	답	39	39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9	예수리	599 - 23	대	127	127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10	예수리	599 - 24	답	76	54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11	예수리	781 - 7	잡	3,493	3,493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12	예수리	781 - 9	대	231	231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13	예수리	781 - 11	잡	17	17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14	예수리	781 - 12	대	7	7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15	예수리	792 - 17	답	26	1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16	예수리	795 - 1	대	357	17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 사 천 시 공 보

제 679 호

구분	리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 소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17	예수리	795 - 2	대	598	24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18	예수리	795 - 5	답	536	160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19	예수리	795 - 7	잡	591	119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20	예수리	795 - 8	잡	244	51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21	예수리	795 - 10	답	12	12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22	예수리	795 - 11	잡	33	33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23	예수리	795 - 12	잡	21	21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24	예수리	796 - 2	답	107	52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25	예수리	796 - 3	답	17	17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26	예수리	797 - 1	답	9	7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27	예수리	799 - 2	답	7	7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28	예수리	799 - 3	답	5	5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29	예수리	800 - 3	전	165	165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30	예수리	800 - 4	대	622	529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31	예수리	800 - 5	전	100	100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32	예수리	800 - 6	대	36	36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33	예수리	801	잡	433	433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34	예수리	801 - 1	답	35	35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35	예수리	801 - 2	대	804	804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36	예수리	801 - 3	잡	937	937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37	예수리	801 - 4	잡	1	1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38	예수리	802 - 2	대	857	508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39	예수리	803 - 6	답	461	1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40	예수리	804	대	588	588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41	예수리	804 - 2	대	1,132	1,132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42	예수리	804 - 3	답	177	177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43	예수리	804 - 5	대	540	540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44	예수리	804 - 6	대	649	649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 사 천 시 공 보

제 679 호

구분	리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 소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45	예수리	805 - 1	대	1,838	1,838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46	예수리	805 - 2	답	489	489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47	예수리	805 - 3	대	573	573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48	예수리	805 - 5	대	567	567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49	예수리	806	대	585	585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50	예수리	806 - 4	전	312	90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51	예수리	806 - 5	전	42	41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52	예수리	807 - 3	도	737	85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53	예수리	807 - 4	임	441	1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54	예수리	830 - 4	대	1,759	553	국(기획재정부)				
55	예수리	835 - 4	대	500	411	국(기획재정부)				
56	예수리	835 - 6	대	55	55	국(기획재정부)				
57	예수리	835 - 7	대	452	325	국(기획재정부)				
58	예수리	산 61 - 2	임	8,430	435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59	예수리	산 61 - 7	임	923	105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60	예수리	산 61 - 8	임	860	860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61	예수리	산 61 - 9	임	444	443	국(기획재정부)				
62	예수리	산 62	임	3,967	224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63	예수리	산 64 - 18	임	40,750	7,310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64	예수리	산 65 - 4	도	220	220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65	예수리	산 65 - 5	도	397	397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66	예수리	산 65 - 7	임	209	209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67	예수리	산 65 - 8	임	574	574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68	예수리	산 65 - 9	도	4	4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69	예수리	산 66 - 4	임	531	531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70	예수리	산 66 - 9	임	813	805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 사 천 시 공 보

제 679호

구분	리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 소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71	예수리	산 66 - 10	임	194	194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72	예수리	산 66 - 13	임	3,761	1,044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73	예수리	산 66 - 14	임	2,170	565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74	예수리	산 66 - 16	임	254	254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75	예수리	산 66 - 17	임	561	344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76	예수리	산 66 - 23	임	220	220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계				<b>91,574</b>	<b>33,796</b>					

### ※지적 확정측량 결과 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1	사천읍 정동면 예수리	851	도로	634.4	중로1-16호선
2	사천읍 정동면 예수리	849	도로	3,998.2	중로1-47호선
3	사천읍 정동면 예수리	842	도로	1,308.3	중로3-46호선
4	사천읍 정동면 예수리	845	도로	1,820.0	소로3-160호선
5	사천읍 정동면 예수리	838	공원	2,745.1	어린이공원29
6	사천읍 정동면 예수리	839	공원	1,204.4	완충녹지11
7	사천읍 정동면 예수리	841	공원	1,525.8	완충녹지12
8	사천읍 정동면 예수리	843	공원	109.9	경관녹지22
9	사천읍 정동면 예수리	844	공원	2,194.6	
10	사천읍 정동면 예수리	846	공원	736.8	
11	사천읍 정동면 예수리	848	공원	3,755.3	경관녹지72
12	사천읍 정동면 예수리	850	공원	1,195.7	공공공지4
13	사천읍 정동면 예수리	840	학교 용지	13,162.0	초등학교18
합 계				<b>34,390.5</b>	

# 사 천 시 공 보

제679호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당해 시설은 공사완료 공고와 동시에 관리청인 사천시에 귀속됨.

# 사 천 시 공 보

제679호

사천시 공고 제2020-995호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6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사천시 사천미술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운영의 효율성 및 현실성을 반영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사용허가사항의 변경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나. 사천미술관 실제 사용시간 반영 및 사용료 규정 보완(안 제6조)

다. 사용허가의 취소신청 규정 신설(안 제8조 및 제8조의2)

# 사 천 시 공 보

제679호

##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문화체육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711, FAX : 831-6013)



# 사 천 시 공 보

제 679 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 사 천 시 공 보

제679호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시장” 을 “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허가사항의 변경) ① 제5조에 따라 미술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천미술관 사용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변경신청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 을 “제2항, 제3항 및 제5항” 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사용기간 및 사용료) ① 전시실의 사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하절기(7월부터 9월까지를 말한다) 주말의 경우에는 오후 10시까지 연장 사용할 수 있다.

③ 제5조의2에 따른 사용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미술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제5항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79호

⑤ 전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8조의2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신청을 받은 경우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사용허가의 취소신청)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미술관 사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 시작 전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천미술관 사용허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 679 호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사용허가) <u>시장</u>은 미술관 자체의 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p> <p>&lt;신 설&gt;</p>	<p>제4조(사용허가) <u>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 ----- ----- -----.</p> <p>제5조의2(허가사항의 변경) ① 제5조에 따라 미술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천미술관 사용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변경신청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p>
<p>제6조(사용기간 및 사용료) ① <u>전시실의 1일 사용시간은 09:00부터 21:00까지로 하고,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u></p> <p>② (생략)</p> <p>&lt;신 설&gt;</p>	<p>제6조(사용기간 및 사용료) ① <u>전시실의 사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하절기(7월부터 9월 까지를 말한다) 주말의 경우에는 오후 10시까지 연장 사용할 수 있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5조의2에 따른 사용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미술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제5항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한다.</p>

# 사 천 시 공 보

제679호

③ 미술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료를 2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허가의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제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 5. (생략)

<신 설>

<신 설>

④ -----  
제2항, 제3항 및 제5항-----  
----. <단서 삭제>

⑤ 전시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허가의 취소 등) -----  
-----  
-----.

1. ~ 5. (현행과 같음)

6. 제8조의2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신청을 받은 경우

제8조의2(사용허가의 취소신청)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미술관 사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 시작 전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천 미술관 사용허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79호

[별지 제3호서식]

## 사천미술관 사용허가사항 변경신청서

### 1. 신청인

주 소(소재지)	성명(단체명)	연락처	비고

### 2. 사용(변경) 시설

- 사용목적(승인번호):
- 변경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사용 일시 (내용)			
기본시설			
부대시설			

### 3. 변경사유: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

# 사 천 시 공 보

제679호

[별지 제4호서식]

## 사천미술관 사용허가 취소신청서

### 1. 신청인

- 주 소(소재지):
- 단체명(대표자):

### 2. 사용시설:

### 3. 사용목적:

### 4. 사용일시:

### 5. 취소사유: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

# 사 천 시 공 보

제679호

## 관 련 법 규

###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사 천 시 공 보

제679호

사천시 공고 제2020-996호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사천시 사천미술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운영의 효율성 및 현실성을 반영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제명 띄어쓰기를 조례명과 일치 등(제명, 안 제1조 및 제2조)
- 나. 허가사항 변경허가 통지 신설(안 제2조)
- 다. 사용료 납부기한의 현실화 및 이용사례가 없는 사용료 분납 규정 삭제  
(안 제8조 및 제8조의2)

# 사 천 시 공 보

제679호

##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문화체육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711, FAX : 831-6013)

# 사 천 시 공 보

제 679 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 사 천 시 공 보

제679호

사천시 규칙 제 호

##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을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으로 한다.

제2조 중 “시장” 을 “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으로,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 를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로, “제5조제2항” 을 “제5조제2항 및 제5조의2제2항” 으로, “4일” 을 “7일” 로 한다.

제3조 중 “조례 제6조제1항” 을 “조례 제6조제5항” 으로, “사용허가 통지일로부터 2일 이내에” 를 “사용 시작 전일까지” 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79호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u>」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사용허가 통지) <u>시장</u>이 「<u>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u>」(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부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u>4일</u>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3조(사용료 납부) <u>조례 제6조제1항</u>에 따른 사용료는 <u>사용허가 통지일로부터 2일 이내</u>에 납부하여야 한다. <u>다만,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분납 시 사용료 1회분은 사용자 통지일로부터 2일 이내로 하며, 2회분은 허가 만료일 7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u></p>	<p><u>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 「<u>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u>」의 -----.</p> <p>제2조(사용허가 통지) <u>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 「<u>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u>」---<u>제5조제2항 및 제5조의2제2항</u>----- <u>7일</u> -----.</p> <p>제3조(사용료 납부) <u>조례 제6조제5항</u>----- <u>사용 시작 전일까지</u> ----- . &lt;단서 삭제&gt;</p>

# 사 천 시 공 보

제679호

사천시 공고 제2020-997호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6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사용허가 통지기한 연장 및 올바른 약칭 사용(안 제2조)

나. 사용료 납부기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안 제3조)

###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문화체육과장)에게

# 사 천 시 공 보

제679호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http://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청(참조: 문화체육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711, FAX : 831-6013)

# 사 천 시 공 보

제 679 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 사 천 시 공 보

제679호

사천시 규칙 제 호

##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시장” 을 “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으로, “4일” 을 “7일” 로 한다.

제3조 중 “허가일로부터 7일” 을 “사용료 부과일로부터 15일” 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79호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사용허가 통지) <u>시장</u>이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사용가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u>4일</u>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2조(사용허가 통지) <u>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 ----- ----- <u>7일</u> ----- ----- .</p>
<p>제3조(사용료 납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u>허가일로부터 7일</u>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p>	<p>제3조(사용료 납부) ----- ----- <u>사용료 부과일로부터 15일</u> ----- .</p>

# 사 천 시 공 보

제679호

## 관 련 법 규

###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